

교습비등 게시표

2023 년 2 월 1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 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 고사 비	재 료 비	피 복 비	급 식 비	기 숙 사 비	차 량 비	
주2일 기초반	936분	230,000	월							230,000(245원/분)
주3일 초급반	1088분	270,000	월							270,000(248원/분)
주3일 중급반	1256분	310,000	월							310,000(246원/분)
주3일 고급반	1336분	330,000	월							330,000(247원/분)
주3일 특급반	1446분	360,000	월							360,000(248원/분)
주2일 중급반	1246분	310,000	월							310,000(248원/분)
주2일 고급반1	1446분	360,000	월							360,000(248원/분)
주2일 고급반2	1464분	360,000	월							360,000(245원/분)
주1일 고급반 1	1008분	250,000	월							250,000(248원/분)
주1일 고급반 2	1260분	310,000	월							310,000(246원/분)
단과 특강반 1	336분	78,000	월							78,000(232원/분)
단과 특강반 2	420분	98,000	월							98,000(233원/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2 월 1 일

에스키어학원 설립·운영자

(주) 에스키에듀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